

2023. 6. 20.(화) 10:00

제306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 4 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일: 2023년 6월 1일

2. 제 출 자: 최재규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달성군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이해하고, 건전한 토론문화를 통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체험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어린이·청소년의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제5조)
- 의견청취 및 사후활용, 포상,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8조)
-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5.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어린이·청소년의 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여 건전한 토론문화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체험하게 하고 참여자들의 참가소감 등 의견청 취 및 결과물을 검토하여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이해하고 건전한 토론문화를 통하여 민주적 의사 결정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나. 가목에 따른 초등학교·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군에 주소를 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2.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군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나. 가목에 따른 중학교·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군에 주소를 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 군에 주소를 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3. “어린이·청소년의회”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방의회 운영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 등 의회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목표와 추진방향
2. 어린이·청소년의회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 심의 등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선정) ① 어린이·청소년의회는 1회 당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어린이·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또는 교육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의회 본회의장 등 시설 사용
2. 배지 등 의회 방문기념품 지급

3. 어린이·청소년의회 수료증 수여

4.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견청취 및 사후활용) ①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해 참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어린이·청소년의회 참가 소감

2.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물을 검토하여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 개최에 우수한 결과를 내는 등 어린이·청소년의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의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회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 등 유관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초·중등교육법(법률)」(2022.10.18. 일부개정, 2023.4.19. 시행)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1.3.23. 일부개정, 2021.9.24.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일: 2023년 6월 1일

2. 제 출 자: 김보경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으로 범죄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지원대상 및 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6조)
- 사업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직무 관련 전·현직 종사자로서 비밀준수의 의무 규정(안 제8조)
- 사업과 관련하여 모범적으로 수행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5. 관계법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한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달성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심사에 따라 재범방지를 위해 법무보호복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

제5조(사업) ① 군수는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및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포상)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2021.7.20. 일부개정, 2022.1.21. 시행)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③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 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수감명령 대상자” 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감명령을 받은 사람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 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일: 2023년 6월 1일

2. 제 출 자: 곽동환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사무실(콜센터 등) 관련 비용의 일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행복택시 사업운영을 위한 사무실(콜센터 등) 관련 비용 지원 규정 신설(안 제7조2)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행복택시 사업자 지정을 받고 그 사업을 하는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사무실(콜센터 등) 관련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행복택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중교통” 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중교통”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달성군수” 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제3항의” 를 “제3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행복택시 사업 지원) 군수는 행복택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7조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사업자 지정을 받고 그 사업을 하는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사무실(콜센터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대중교통</u> 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그곳을 왕래하는 사람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의 운행과 행복택시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대구광역시 달성군 대중교통</u> ----- ----- ----- ----- -----.</p>
<p>제3조(대상마을 선정) ① <u>달성군수</u> (이하 “군수” 라 한다)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관할 읍·면장으로부터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아 그 지역에서 행복택시 운행 필요성이 있는 마을을 선정하여 행복택시를 운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3조(대상마을 선정) ① <u>대구광역시 달성군수</u>----- ----- -----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행복택시 이용권의 발급)</p>	<p>제6조(행복택시 이용권의 발급)</p>
<p>① ~ ③ (생략)</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제3항</u>의 배분방법에 대하여 해당 마을주민들로부터 민원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 읍·면장은 그 마을대표자와 협의하여 배분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p>	<p>④ <u>제3항</u>에 따른 ----- ----- -----.</p>

⑤ (생략)

<신설>

제12조(준용)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의2(행복택시 사업 지원) 군수는 행복택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7조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사업자 지정을 받고 그 사업을 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사무실(콜센터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자치법(법률)」 (2021.12.28. 타법개정, 2022.1.13. 시행)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2021.7.27. 일부개정, 2022.1.28. 시행)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일: 2023년 6월 1일

2. 제 출 자: 양은숙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 (' 20.12.10.)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함
-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와 내용을 다수 정비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어려운 용어 정비

5.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와 내용을 다수 정비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 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4호 중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을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능률의 향상을 통한 주민서비스 개선
3. 주민 의견 반영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지능정보화 시책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

제2장의 제목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을 “(종합계획의 수립)”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정보화” 를 “지능정보화” 로 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기본계획” 을 “종합계획” 으로 하고, “국가정보화기본계획과 대구광역시 정보화기본계획” 을 “정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대구광역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 을 “종합계획”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10호 중 “지역정보화” 를 각각 “지능정보화” 로 한다.

제4조제4항은 삭제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정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연도의 실행계획을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지역정보화” 를 각각 “지능정보화” 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제1호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을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역정보화” 를 “지능정보화”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을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역정보화” 를 “지능정보화” 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의 제목 “(정보화책임관)” 을 “(지능정보화책임관)” 으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제1항 중 “지역정보화” 를 “지능정보화” 로 하고, “정보화책임관” 을 “지능정보화책임관” 으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된다.

제8조(중전의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책임관” 을 “지능정보화책임관”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을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정보기술” 을 “지능정보기술” 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정보화책임관” 을 “지능정보화책임관” 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지역정보화의 추진” 을 “지능정보화의 추진” 으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의 제목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을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화” 를 “지능정보화”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정보화” 를 “지능정보화”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정보화사업” 을 “지능정보화사업” 으로 한다.

제9조의2(중전의 제8조의2)의 제목 “(정보화 추진 지원)” 을 “(지능정보화 추진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지역정보화” 를 “지능정보화” 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9조)의 제목 “(정보화사업의 사전검토)” 를 “(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검토)”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화사업을” 을 “지능정보화사업을”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책임관” 을 각각 “지능정보화책임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4호 중 “정보화” 를 각각 “지능정보화” 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역정보화” 를 각각 “지능정보화” 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1조)제1항 중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초연결 지능정보통신망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정보화” 를 “지능정보화” 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를 각각 “지능정보서비스” 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5조)의 제목 “(정보화 교육)” 을 “(지능정보화 교육의 실시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지능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해 주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④ 군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기업이나 단체 등에 지능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의 제목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를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로 한다.

제17조(중전의 제16조)제1항 중 “정보화” 를 각각 “지능정보화” 로 한다.

제18조(중전의 제17조)제1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를 “지능정보서비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를 각각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로 한다.

제19조(중전의 제18조)제1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를 “지능정보서비스” 로 한다.

제20조(중전의 제19조)의 제목 “(정보보호)” 를 “(정보보호 대책의 수립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 정보시스템 운영 장소의 출입 권한 등 보안에 관한 사항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및 폐기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보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중전의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정보보호 대책을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20조(중전의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정보보호를 위해 전산기기에 사용되는 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중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 조례</u></p> <p>제1장 (생략)</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u>지역정보화</u>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u>지역정보화</u>”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보건복지·교육·문화·환경·도시건설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p> <p>4. “정보취약계층”이란 <u>정보통신 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u> 등에 자유</p>	<p><u>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화 조례</u></p> <p>제1장 (현행과 같음)</p> <p>제1조(목적) ----- ---<u>지능정보화</u>----- ----「<u>지능정보화 기본법</u>」----- ----- -----.</p> <p>제2조(정의)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지능정보화</u>”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 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p> <p>4. ----- <u>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u> -----</p>

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생략)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 마련
4. (생략)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지역정보화 시책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달성군의 여건과 환경을 감

-----.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

지능정보화 -----
-----.

1. (현행과 같음)
2. 행정능률의 향상을 통한 주민서비스 개선
3. 주민 의견 반영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현행과 같음)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지능정보화 시책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

제2장 지능정보화 -----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 지

능정보화-----
-----대구광역시

안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정보화기본계획과 대구광역시 정보화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 9. (생략)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시 달성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

② --- 종합계획----- 정
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대구
광역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
-----.

③ 종합계획-----
-----.

1. 지능정보화 -----
2. 지능정보화-----
3. ~ 9. (현행과 같음)

10. ----- 지능정보화 -----

<삭 제>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정부의 지능정보

사회 종합계획 및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실행계획을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정보
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
문을 위하여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
성군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③ (생략)

1. ~ 2. (생략)

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 ⑦ (생략)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지능정보화

-----.

② ~ ③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지능정보화-----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기능) -----

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계획의 중요 사항 변경 및 지역 정보화 정책 사업의 조정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4.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생략)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

-----.

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2. ----- 지능정보화

3.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4. ----- 지능정보화-----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 지능 정보화 ----- 지능정보화 -----
----- “지능정보화책임관” -
-----.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
-----.

1. (현행과 같음)
2. ----- 종합 계획 및 실행계획-----

조정

3. (생략)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 7. (생략)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 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8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보건복지·교육·문화·환경·도시건설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현행과 같음)

4. 지능정보기술-----

5. ~ 7. (현행과 같음)

8. ----- 지능정보화 책임관-----

제3장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

----- 지능정보화----- .

② ----- 지능정보화-----

----- .

③ ----- 지능정보화사업-----

----- .

제8조의2(정보화 추진 지원)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그 밖에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략)

제9조(정보화사업의 사전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정보화 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

제9조의2(지능정보화 추진 지원)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지능정보화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검토) ①----- 지능정보화사업-----
----- 지능정보화책임관-----
-----.

② 지능정보화책임관-----

-----.

1. 지능정보화 -----

2. ~ 3. (생략)

4. 관련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 3. (현행과 같음)

4. ----- 지능정보화-----

제11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 지능정보화-----

② ----- 지능정보화 -----
----- 지능정보화-----

제12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

② -----
----- 지능정보화-----

제12조(생략)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비스 제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생략)

제15조(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3조(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4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

----- 지능정보서비스 -----.

② ---- 지능정보서비스 -----
----- 지능정보서비스-----
-----.

제15조(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6조(지능정보화 교육의 실시 등)

① 군수는 지능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해 주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략)

1.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

④ 군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기업이나 단체 등에 지능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7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지능정보화-----지능정보화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
----- 지능정보서비스-----

-----.

② (현행과 같음)

1. -----
----- 지능정보제품

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 지원

2. 제1호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3. (생략)

제18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장 애인 및 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및 지능정보서비스-----

--

2. -----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

3. (현행과 같음)

제19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
---- 지능정보서비스 -----

-----.

제20조(정보보호 대책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 정보시스템 운영 장소의 출입 권한 등 보안에 관한 사항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및 폐기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보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
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야 한다.

<신 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정보보호
대책을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보호를 위해 전산기
기에 사용되는 정보를 분리하여 보관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2021.7.20. 타법개정, 2022.7.21.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지능정보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 마. 무선 또는 유·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7.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9.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서비스 등 모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하 “초연결”(超連結)이라 한다]되어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0.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이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설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등을 말한다.
11. “정보문화”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형성되는 행동방식·가치관·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12. “지능정보사회윤리”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이용 및 지능정보화의 추진 과정에서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13. “정보격차”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1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1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인간의 존엄·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비밀을 보장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활용이 인류의 공동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실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으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실행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점검·분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기관등이 추진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은 제외한다.
- ⑦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기반 조성, 산업의 지능정보화 등 주요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통일성·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이하 “지역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 및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8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① 정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간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능정보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 검증절차, 구매촉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사업자
2. 장애인·고령자·농어민 또는 저소득자 등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3. 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암호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6월 1일

2. 제 출 자: 양은숙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사무관리규정」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공인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정비하여 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공인 관련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 규정 변경사항 반영(안 제4조제1항)
- 공인의 글씨를 종전의 알아보기 힘든 “한글 전서체”에서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변경(안 제4조제2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어려운 용어 정비

5. 관계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인 관련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 규정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공인의 글씨를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달성군공인(군본청, 읍면 출장소 그 밖에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 방법”을 “달성군 본청, 읍·면, 출장소, 소속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별표 2】와 같이”를 “별표 2와 같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별표 3】과 같이”를 각각 “별표 3과 같이”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지정한 달성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군 본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을 “달성군 본청, 읍·면, 출장소, 소속기관의 공인(이하 “공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총리령 제395호)을 준용하고, 공인규격【별표 1】과 같이 한다.”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인 구분에 따른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읍면장, 직속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를 “달성군 본청, 읍·면, 출장소,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이” 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전자공인등록대장” 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 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전산팀장은 등록된 공인” 을 “정보통신과장은 제2항에 따라 찍은 일반 공인의 인영” 으로 한다.

제6조의2제4항 중 “전자공인등록대장” 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 으로 한다.

제7조 중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이하 “공인대장”이라 한다)을” 로 한다.

제8조 중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달성군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해당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록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관수자” 를 “보관자” 로 하고, “분실 또는 허위” 를 “분실” 로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공인관수자)” 를 “(공인보관자)”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수자” 를 “보관자” 로 하고, “사업소에는 업무담당 6급” 을 “출장소에는 출장소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공인관수자” 를 각각 “공인보관자” 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관수방법)” 을 “(보관방법)” 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공인관수자” 를 “공인보관자” 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3호의2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제6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의 글씨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인영으로 본다.

【별표 1】

공 인 의 구 분	규 격	비 고
1. 군수의 공인 2. 보건소장의 공인 3.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공인 4. 읍면장의 공인 5. 출장소장의 공인 6.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2.4cm 정사각형 2.1cm 정사각형 2.1cm 정사각형 2.1cm 정사각형 1.8cm 정사각형 2.0cm 정사각형 ※단, 출납원 및 그 분임자 의 공인은 1.8cm 정사각형 으로 한다.	
7. 인증기 공인 가. 군수의 공인 나. 보건소장의 공인 다. 읍면장의 공인 라. 출장소장의 공인	2.4cm 정사각형 2.1cm 정사각형 2.1cm 정사각형 1.8cm 정사각형	

【별지 제2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

- 공인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공인폐기신고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 신청

공 인 명		
종 류		<input type="checkbox"/> 청인 <input type="checkbox"/> 직인 <input type="checkbox"/> 특수관인
등록(재등록, 폐기)사유		
폐기대상 공인처리	폐기예정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 기 방 법	<input type="checkbox"/> 이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폐 기 자 (분 실 자)	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		

발신명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3호 서식】

공 인 대 장

공 인 명					
종 류	<input type="checkbox"/> 청인 <input type="checkbox"/> 직인 <input type="checkbox"/> 특수관인		관리부서		
<input type="checkbox"/> 등록 · <input type="checkbox"/> 재등록공인	(인 영)	등록일 (재등록일)	년	월 일	
		새긴날	년	월 일	
		새긴사람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재등록) 사 유			
		공보공고	년	월 일 - 일 공고 제 호	
		비 고			
폐 기 공 인	(인 영)	등록일 (재등록일)	년	월 일	
		폐기일 (분실일)	년	월 일	
		폐기사유	<input type="checkbox"/> 마멸 <input type="checkbox"/> 분실 <input type="checkbox"/> 기타()		
		폐기방법	<input type="checkbox"/> 소각 <input type="checkbox"/> 이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폐기자 (분실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공보공고	년	월 일 - 일 공고 제 호	
		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input type="checkbox"/>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input type="checkbox"/>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m²) 또는 210mm×297mm(한지)

【별지 제3호의2 서식】

전 자 이 미 지 공 인 대 장

공 인 명			
종 류		<input type="checkbox"/> 청인 <input type="checkbox"/> 직인 <input type="checkbox"/> 특수관인	
<input type="checkbox"/> 등 록 . <input type="checkbox"/> 재 등 록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	등록(재등록) 사 유	
		관리부서	
		비 고	
폐 기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	
	폐기사유		
	폐 기 자	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		

비 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m²) 또는 210mm×297mm(한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공인(군본청, 읍면 출장소 그 밖에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달성</u> <u>군 본청, 읍·면, 출장소, 소속기관</u> <u>및 회계관계공무원이 사용하는 공</u> <u>인의 규격, 보관방법, -----</u> ----- ----- -----</p>
<p>제2조(공인의 비치 사용) ① (생략)</p> <p>②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p> <p>③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 및 읍면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p>	<p>제2조(공인의 비치 사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별표 2와 같이</u>----- -----</p> <p>③ ----- ----- ----- ----- -----<u>별표 3</u> <u>과 같이</u>----- -----</p>

④ (생략)

⑤ 주민편익증진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별표 3】** 과 같이 공인을 인증기에 부착하여 날인할 수 있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군 본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규격과 인영의 내용은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총리령 제395호)을 준용하고, 공인규격 **【별표 1】** 과 같이 한다. 다만, 군수직인을 전산처리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세로 각 1.5cm)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④ (현행과 같음)

⑤ -----
----- 별표 3과 같이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지정한 달성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달성군 본청, 읍·면, 출장소, 소속기관의 공인(이하 “공인”이라 한다)의 규격과 인영의 내용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의 글씨는 한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
를 하여야 한다.

- ④ 정보통신과장은 등록된 전자공
인을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 대
장의 해당란에 붙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대장) 정보통신과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
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인영의 보존) 정보통신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
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
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공인을 신조 각인하거
나 개인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
다.

제10조(신조 및 개각인영 보고) ①
신조 또는 개각된 군수, 읍면장공
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
외한다)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3부를 익월 5일까지 대구

- ④ -----
-----전자이미지공인대
장-----

제7조(공인대장) -----별지 제3
호 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이하 “공
인대장”이라 한다)을-----

--

제8조(인영의 보존) -----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제9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
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달성군 공보에 공고하
여야 한다.

<삭 제>

광역시장에게 제출된 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1조(공인의 폐기) ①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기 등으로 공인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정보통신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6호 서식】의 폐인대장에 기록하여 올리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인은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인을 재등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해당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록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7호 서식】
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정보통
신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관수자) ①공인의 관수
자는 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자,
사업소에는 업무담당 6급이, 읍면
에 있어서는 소속공무원중 업무
담당 6급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
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
수자가 된다.

②공인관수자는 상사의 명을 받아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공인관수자의 유고시에는 공인관
수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
무를 대행한다.

제14조(관수방법) (생략)

제15조(공인의 날인) ①공인의 날인
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
조한후 날인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보
관자는 ----- 분실, -----

-----별

지 제7호 서식에 따른-----

-

제13조(공인보관자) ① 공인의 보관자
는 -----출장

소에는 출장소장이-----

-----보관자-----

② 공인보관자 -----

③ 공인보관자 ----- 공인
보관자-----

제14조(보관방법) (현행과 같음)

제15조(공인의 날인) ① -----
--- 공인보관자-----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 서식】

공인외신포(개각)신청서 (개정 1998. 8. 31)	
수신: 정보통신과장	신청인
1. 이유	신조계각의 이유용도
2. 서체규격	
3. 공인영역	
4. 사용개시	년 월 일
5. 비치처및관수자	
6. 공인영역모형	

【별지 제3호 서식】

공인대장			
인명		서체규격	
패기	년 월 일	사용개시	
이유	마멸, 직제변경, 기타	각인근거	
영도		인	
보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	
책임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비고			

【별지 제3호의2 서식】

전자공인등록대장			
인명		등록일(계등록일):	년 월 일
패기	<input type="checkbox"/> 정인 <input type="checkbox"/> 직인 <input type="checkbox"/> 특수공인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전자공인영역 영역번호	전자공인영역	등록(계등록)사유	
	전자공인영역의 일련공인영역	관리부서	
전자공인영역	전자공인영역	등록일(계등록일):	년 월 일
	전자공인영역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전자공인영역	패기자 소속: 직급: 성명:	
비고			

※ 비고: 전자공인용 등록할 당시의 일련공인의 인영을 해당함에 하고 그 직은 인 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함에 등록하며, 컴퓨터화함에 등록 된 전자공인용 출력하여 그 전자공인용 인영을 해당함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신청기관명		
수신 ()		
<input type="checkbox"/> 공인등록(계등록) 신청		
비고: <input type="checkbox"/> 공인외신포		
<input type="checkbox"/> 전자이미지공인등록(계등록) 신청		
공인영역	<input type="checkbox"/> 정인 <input type="checkbox"/> 직인 <input type="checkbox"/> 특수공인	
종류		
등록(계등록, 패기)사유		
패기대상 공인처	패기대상일 (본실일)	년 월 일
	패기방법	<input type="checkbox"/> 직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패기자 (본실자)	소속:	
	직급:	성명:
비고		
발신행의		
기관차(회/지급) 서명	장도차(회/지급) 서명	관계관(회/지급) 서명
장도차(회/지급) 서명		
서명 처리과장-일련번호(서명일)		장수 처리과장-일련번호(서명일)
주소	/ 출제자의 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공무실의 전자우편주소 / 공과구분

【별지 제3호 서식】

공인대장			
공인명		종류	<input type="checkbox"/> 정인 <input type="checkbox"/> 직인 <input type="checkbox"/> 특수공인
관리부서		관리부서	
공인영역 (인명)	등록일 (계등록일)	년 월 일	
	새긴날	년 월 일	
공인영역 (인명)	주소:		
	새긴날	성명 및 성명: 생년월일:	
공인영역 (인명)	최초사용일	년 월 일	
	계보		
공인영역 (인명)	등록(계등록)사유		
	공보공고	년 월 일	일
비고			
패기공인 (인명)	등록일 (계등록일)	년 월 일	
	패기일 (본실일)	년 월 일	
패기사유	<input type="checkbox"/> 마멸 <input type="checkbox"/> 분실 <input type="checkbox"/> 기타()		
	패기방법	<input type="checkbox"/> 직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패기자 (본실자)	소속:		
	직급:	성명:	
공보공고	년 월 일		일
	비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일에 V표함,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일에 V표함 한다.
※ 비고란은 관리부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mm×297mm(표준용지(1종)70g/㎡) 또는 210mm×297mm(한지)

【별지 제3호의2 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인명		종류	<input type="checkbox"/> 정인 <input type="checkbox"/> 직인 <input type="checkbox"/> 특수공인
관리부서		관리부서	
전자이미지공인영역	등록일(계등록일):	년 월 일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전자이미지공인영역의 일련공인영역	등록(계등록)사유		
	관리부서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영역	등록일(계등록일):	년 월 일	
	패기일:	년 월 일	
패기사유	<input type="checkbox"/> 마멸 <input type="checkbox"/> 분실 <input type="checkbox"/> 기타()		
	패기자	소속: 직급:	
성명:			
	비고		

※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용 등록할 당시의 일련공인의 인영을 해당함에 하고, 그 직은 인 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함에 등록하며, 컴퓨터화함에 등록된 전자 이미지공인용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용 인영을 해당함에 붙여야 한다.
210mm×297mm(표준용지(1종)70g/㎡) 또는 210mm×297mm(한지)

<삭제>

<삭제>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1.1.5. 타법개정·시행)
제35조(규격) 관인의 모양은 별표의 규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기
관의 장이 정한다.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① 행정기관이 관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관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행정기관에 갱신한 관인
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이 관인을 폐기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인대장에 관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관인을 제39조에 따른 관
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관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관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
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
이미지관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2021.9.7. 타법개정·시행)

제28조(관인의 내용)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
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영 제34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관인의 인면
(관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공영버스정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일: 2023년 6월 1일

2. 제 출 자: 이연숙 의원 등 3인

3. 제안사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설치한 ‘현풍공영버스정류장’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시설의 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시설의 사용허가 등 사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8조)
- 시설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5.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치한 ‘현풍 공영버스정류장’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군민의 안전과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대폭 증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공영버스정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설치한 “현풍공영버스정류장”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가 적용되는 시설의 명칭은 현풍공영버스정류장(이하 “정류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136길 15-49 일원에 둔다.

제3조(사업의 범위)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등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류장의 운영 및 관리
2. 정류장 또는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이하 “허가등”이라 한다)과 그 사항의 관리
3. 정류장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정류장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정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류장 운영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우선 위탁할 수 있다.

- ③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와 수탁자 간 협약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 등) 정류장이나 그 시설물에 대해 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등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제6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제5조에 따라 정류장이나 그 시설물에 대해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사용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차량을 주·정차 하는 행위
2. 정류장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
3.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법령에서 정류장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7조(사용허가등의 취소 등)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정류장이나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등을 취소나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사용료나 대부료를 두 차례 이상 연체한 때
2. 제6조 각 호에 해당하거나 군수의 허가나 승낙 없이 정류장이나 그 시설물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때
3.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때
4.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

제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중 정류장 또는 그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정류장 또는 그 시설물을 훼손, 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류장 운영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정류장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2021.7.27. 일부개정, 2022.1.28. 시행)
- 제49조(공영터미널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제 36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터미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직접 설치하는 터미널을 관리·운영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일: 2023년 6월 13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경조사 휴가 신설 및 확대, 성희롱·성폭력 등 피해자에게 치유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복무선서의 방법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조 제3항, 별표 2)
- 비밀엄수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4조)
- 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안 제14조, 별표 4)
- 상위법 근거 조문 변경(안 제15조 제2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8항)
 - 경조사휴가 신설 및 확대
 - 장기재직휴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 ‘지침’ 으로 정함
 - 군수 특별휴가 허가 기준에 ‘사안별’ 문구 추가하여 해석 명확화
 -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 특별휴가 조항 신설
- 상위 법령 등 당연 적용되는 중복조항 삭제(안, 별표 전반)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안, 별표 전반)
- 현행 부칙을 모두 삭제하고 신설(안 부칙 제1조 ~ 3조)

5.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경조사 휴가 신설 및 확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치유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휴가 규정 신설로 조례 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지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지켜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이나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사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에 따른다.

제15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 20일

2.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 30일(단, 제1호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50일)

④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군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 호 사항별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대규모 행사 및 주요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군정에 기여한 경우
 2. 업무추진 성과가 탁월하거나 대외 수상을 받아 군의 위상을 높인 경우
 3. 지역의 재난·재해의 발생 등 격무에 시달린 경우
- ⑦ 영 제7조의7 제7항, 제8항의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시 일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고,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같은 날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하는 날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 ⑧ 직장 안에서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연간 14일 이내의 치유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 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적용한다.

제3조(특별휴가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해당 조항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선 서 문 (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서의 절차 및 방법 (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군수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군수가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공직자 행동규범 (제5조제2항 관련)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는 부드럽게 말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하게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행동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 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하게 대한다. ○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4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15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 양	본인	20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3(겸임)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겸임하게 하거나 경력직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임직원 간에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의 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66조의 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었을 때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2021. 10. 8.>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1.>

⑤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및 제2항의 수당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환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1.][전문개정 2008. 12. 31.]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개정 2013. 12. 11., 2018. 12. 18.>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 3. 7., 2017. 3. 8., 2018. 9. 18., 2018. 12. 18., 2019. 4. 16.>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 부상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제7조의 7(특별휴가)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 5. 31., 2018. 12. 18., 2019. 12. 31.>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4. 25., 2018. 12. 18., 2019. 12. 31.>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9. 5. 21.>

② 지방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기계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일: 2023년 6월 13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달성군 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계양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국기의 계양일(안 제3조)
- 국기선양 사업 및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가로기의 계양(안 제4조~ 제6조)
- 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의 설치·운영(안 제7조)

5. 관계법령

- 「대한민국국기법」,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국기의 계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과 관련하여 국기게양일을 추가로 명시하고,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군민이 쉽게 태극기를 구입하고 훼손된 태극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국기 판매대 및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 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애국심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달성군 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달성군민의 날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결로 정한 날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가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에 힘써야 한다.

제4조(국기선양 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국기를 대상으로 한 각종 행사의 개최

2. 국기 게양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군수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달성군청(이하 “군청”이라 한다)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2. 그 밖에 군수가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군수는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방문 기념품등으로 국기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해 국기선양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가로기의 게양) 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도로의 일정 부분을 가로기 상시게양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

- 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의 설치·운영) 군수는 군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판매대와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제10조(국기의 관리 등) ①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④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기를 영구에 덮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국가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지원한다.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6조(국기수거함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관리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나 드높임에 솔선 수범한 경우(개정 2020.12.30.)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일: 2023년 6월 13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공무원 여비 규정」 상위 법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별표 1)
 - 제2호 1인당 숙박비 상한액 상향 (서울 70,000원 → 100,000원, 광역시 60,000원 → 8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 70,000원)
-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 부정 수령액의 2배 → 5배(안 제5조)

5.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 관외 출장 시 숙박비의 상한액과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 상향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 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이” 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이하 ” 공무원 “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2】에” 를 “별표 2에” 로 하며, “군수가” 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 군수 “라 한다)가” 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을 각각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를 “공무원이” 로 하고,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2배” 를 각각 “5배” 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을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규정 【별표1】” 을 “규정 별표 1” 로 한다.

별표 1의 구분 제2호의 숙박비(1박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 70,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이</u> ----- ----- ----- -----.</p>
<p>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u>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u>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u>군수가</u> 따로 정한다.</p>	<p>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 <u>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u> ----- ② ----- ----- <u>별표 2에</u> ----- -----, ----- <u>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u> -----.</p>
<p>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u>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u>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u>공무원여비규정【별표1】</u> 각호를 적용한다.</p>	<p>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 ----- ----- 「<u>공무원 여비 규정</u>」 <u>별표 1</u> ----- ② ----- ----- 「<u>공무원 여비 규정</u>」 <u>별표 1</u> -----.</p>
<p>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u>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u></p>	<p>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u>공무원이</u> -----</p>

<p>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u>【별표1】</u>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p>	<p>----- <u>별표 1의 기준에 따라</u> ----- -----.</p>
<p>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u>2배</u>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p> <p>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u>2배</u> 상당액으로 한다.</p>	<p>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 ----- ----- <u>5배</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5배</u> -----.</p>
<p>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1.~ 6. (생략) 7. <u>규정 [별표1]</u>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p> <p>8. (생략)</p>	<p>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1.~ 6. (현행과 같음) 7. <u>규정 별표 1</u> ----- ----- -----.</p> <p>8. (현행과 같음)</p>
<p>[별표 1] 제2호 숙박비(1박당) 실비(<u>상한액: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u>)</p>	<p>[별표 1] 제2호 숙박비(1박당) 실비(<u>상한액: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 70,000</u>)</p>

[별표1]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표(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1박 당)
제1호	실비(특실)	실비(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일반실)	실비(2등급)	실비	실비	실비(상한액:서울 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참고**상위 및 관계 법령[발췌]**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 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제31조(가산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일: 2023년 6월 13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종이수입증지 사용을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를 전면 사용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사용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전자수입증지 등의 정의 신설(안 제2조)
- 수수료 등의 징수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고, 전자수입증지를 발행 (안 제3조)
-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종이수입증지 사용과 관련된 종전 조례의 불필요한 규정 삭제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종이수입증지 사용을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를 전면 사용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사용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이하 “수입증지” 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행정사무를 제공하고 징수하는 수수료 등의 납부를 증명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 (이하 “계기” 라 한다)란 수수료 등의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 란 수입증지로서, 계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일괄하여 “전자수입증지 발행기기” 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군이 징수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② 제1항 각 호의 수수료 등을 받은 군의 담당공무원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해 주어야 한다.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군수가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의 인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금액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

② 군수는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는 전자수입증지 발행기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또는 사용폐지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자수입증지 발행기기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전자수입증지 발행기기의 고장으로 일시적으로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서류 뒷면에 별표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발급사항을 기재한 후 수수료 등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의 특색 또는 군을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 중 현금은 징수한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입하는 수입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일일전표를 붙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해당 결산자료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전자수입증지 발행기기의 고장이나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전자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인영된 수입증지와 결손 소인 등 증빙자료를 일일결산대장에 첨부하여 당일 납입한 금액과 전자수입증지 발행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별표]

고무인 (제4조 관련)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원을 납부한 증명입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4.0센티미터

10.0센티미터

[별지 제3호서식]

수입증지 수입금 일일결산대장

부 서 명 :	결 재	담당자	팀장
담 당 자 :			
증지발행일 : 년 월 일			

□ 일일 증지 발행 내역

기기 구분	발행 금액 (A)	결손 금액 (B)	실 발행 금액 (C=A-B)
일 계			
월 누계			
연 누계			

□ 당일 납입 대상 금액

실 발행 금액 일계 (C)	카드 결제 금액 (D)	당일 납입 대상 금액 (E=C-D)

□ 카드 결제 금액 당일 납입 내역

결 제 일 자	
납입대상금액 (F)	

□ 기기 관리 사항(장애 발생 조치 내용 및 그 밖의 사항 기재)

- ※ 첨부 1. 일일전표(전자수입증지 발행기기 출력물)
 2. 결손 증빙자료
 3. 증지수입금(E, F) 납입 영수증

□ 지방자치법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4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① 세외수입으로서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수입증지로 수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증지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즉시 접수 도장을 찍고, 따로 세입징수 결정을 하거나 수납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亡失)되거나 훼손(毀損)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

제5조(변상금액의 감면)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라 변상금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데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회계관계직원의 회계사무의 집행 내용, 손해발생의 원인, 회계관계직원의 과실이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노력 등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회계관계직원에게 손해액 전부를 변상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계관계직원이 평소 예산의 절약이나 회계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6조(감사원의 판정 전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계관계직원이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이 판정하기 전이라도 해당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감독기관(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장
4. 해당 기관(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경우로서 감독기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장

② 제1항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별·직위별로 위임 한도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 또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변상명령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은 이의가 있으면 감사원장이 정하는 판정청구서에 의하여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한 자는 감사원이 해당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정하거나 제5조에 따라 변상금액을 감면한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이 이미 낸 변상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⑤ 감사원의 판정에 따른 변상명령서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상명령서가 해당 회계관계직원에게 송달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제7조(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일: 2023년 6월 13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5급 이상 공무원은 소관부서의 다양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어 사실상 체납징수 업무의 실무를 하지 않으므로,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4급 이상 공무원에서 관리자인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2조제5항 “4급” 을 “5급” 으로 개정하고,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는 단서 신설

5.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4급 이상 공무원에서 관리자인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4급”을 “5급”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지급대상) ① ~ ④ (생략)</p> <p>⑤ 제1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4급 이상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서 신설></p>	<p>제2조(지급대상)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5급 ----- ----- ----- .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p>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① 법 제146조 제1항 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6월 13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22. 4. 21.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및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2022.7.)에 따라 비소모품과 소모품의 구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소모품의 구분 기준을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변경함(안 별표 1)
- 제13조, 제24조, 제25조의 “비품” 을 “비소모품” 으로 수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에 따라 법률로 위임한 필수 정비 사항을 조례에 반영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비소모품과 소모품의 구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소모품의 구분 기준을 취득단가 10만 원에서 50만 원 미만의 물품으로 변경하고, 제13조, 제24조, 제25조의 비품을 비소모품으로 수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법률로 위임한 필수 정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5조제1항 중 “비품”을 각각 “비소모품”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물품 운영 상황의 공개 등)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중요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u>비품</u>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의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p> <p>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물품출납원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u>비품출납</u> 및 운용카드 3. ----- 4. ----- <p>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u>비품출납</u>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u>비품출납</u> 및 운용카드에-----.</p> <p>제25조(장부의 작성)①<u>비품</u>관계 장표를-----.</p> <p><신설></p>	<p>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u>비소모품</u>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의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p> <p>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물품출납원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u>비소모품출납</u> 및 운용카드 3. ----- 4. ----- <p>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u>비소모품출납</u>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u>비소모품출납</u> 및 운용카드에-----.</p> <p>제25조(장부의 작성)①<u>비소모품</u>관계 장표를-----.</p> <p>제 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중요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제5조 관련)

○ 물품의 종류

- (1) 비소모품 -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 (2) 소 모 품 -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사용 일용품 등 비소모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그 밖의 구성 부분이 되는 물품.

○ 품종구분 기준

- (1) 비소모품 -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않는 물품. 다만,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②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 (2) 소 모 품 -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등.)
②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 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④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및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여러 개의 부분품으로 조합 완성되는 것으로서 전체를 1개의 단일물품으로 관리가 곤란한 물품) 또는 진압장비, 의류, 핸드폰(휴대용으로 개인에게 지급되어 관리되고 있는 물품) 등. (다만, 무기 또는 탄약류는 제외)

○ 물품상태 분류기준

-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써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 (3) 수리필요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행정안전부)**

다. 소모품의 관리

1) 소모품 의의

-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 사용 일용품 등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다른 물품을 수립·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및 OA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여러 개의 부분품을 조합 완성되는 것으로서 전체를 1개의 단일물품으로 관리가 곤란한 물품) 또는 진압장비, 의류, 핸드폰(휴대용으로써 개인에게 지급되어 관리되고 있는 물품) 등(단, 무기 및 탄약류는 제외)

2) 비소모품 의의

-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3) 소모품의 수불관리

- 취득금액의 규모가 큰 소모품, 희귀 소모품,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 등 주요 소모품은 ‘소모품대장’에 수불상황 기록관리
 - 보관중인 소모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운용부서에 불출하여 관리 중인 소모품에 대하여는 사용공무원이 관리

4) 유의사항

-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소모품에 대하여는 재고운용수준을 정하여 관리
 - 기록관리가 불필요한 물품까지 소모품대장을 정리함으로써 비능률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 2023년 6월 13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출사유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3호(결산의 승인)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결산 등의 심사)

5. 세입세출 결산규모

1) 총 괄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차 인 잔 액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1,174,648	1,176,150	984,373	191,777	93,661	19,699	28,525	11,871	38,021

2) 일반회계

가. 세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1,172,707	1,196,955	1,174,370	1,805	20,780

나. 세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1,043,500	129,207	1,172,707	982,963	141,885	12,425	35,434

3) 특별회계

가. 세입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기타특별회계	1,941	1,782	1,781	0	1

나. 세출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기타특별회계	1,941	1,941	1,410	0	43	488

4)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계	계	417	141,885	‘회원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 등
일반회계	명시이월	291	93,661	
	사고이월	112	19,699	
	계속비이월	14	28,525	
특별회계	명시이월	0	0	
	사고이월	0	0	

6. 기금의 결산

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해당연도 증감액		해당연도말 조성액
		조성액	사용액	
계	123,413	101,731	1,037	224,10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03,868	99,627	0	203,49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832	86	729	6,189
식품진흥기금	115	42	40	117
자활기금	868	34	30	872
재난관리기금	10,642	1,934	132	12,444
옥외광고발전기금	305	2	100	207
체육진흥기금	783	6	6	783

7.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 권

채권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해당연도 발생액	해당연도 소멸액	해당연도말 현재액
계	3,704	158	273	3,589
일반회계	3,463	138	273	3,328
특별회계	1	0	0	1
기 금	240	20	0	260

2) 채 무

채무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해당연도 증감액		해당연도말 현재액
		발생액	소멸액	
계	0	1,150	0	1,150
일반회계	0	1,150	0	1,150
기타특별회계	0	0	0	0

※차입처: 주택도시보증공사(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용자), 만기일: '29.11.21, 이자율 1.5%(변동금리)

3) 공유재산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용도별	전년도말 현재액	해당연도 증감액		해당연도말 현재액
		증	감	
계	2,544,128	371,959	104,175	2,811,912
행정재산	2,536,504	235,416	101,784	2,670,136
일반재산	7,624	1,504	2,391	6,737
건설중인재산	0	135,039	0	135,039

4) 물 품

물품 증감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전년도말현재액		증 감 내 역				해당연도말현재액	
		취 득		처 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962	13,271	9	201	4	73	967	13,399

8. 금고의 결산

1) 총수입 및 지출액

(단위: 백만원)

구분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잔 액 (금고보관액)
계	1,176,150	984,373	191,777
일반회계	1,174,369	982,963	191,406
기타특별회계	1,781	1,410	371

2) 세입세출외현금

(단위: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해당연도 증감액			해당연도말 현재액
		계	증가액	지출액	
계	1,362	-321	22,189	22,510	1,041

9. 검토의견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45억원(10.6%)이 감소하였고, 지난 5년간 평균증감율이 -27.7%로 꾸준히 감소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의 균형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 세출예산의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이 1조 1,728억 원, 지출액은 9,830억 원이고 집행률은 83.8%로 전년대비 0.4%가 감소하였으며
- 이월액은 1,419억 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12.1%로 전년대비 9.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부진, 보상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사업비가 그 원인으로 사업 시행 전 치밀한 사전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으로 집행률을 높이고, 이월되는 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 2022회계연도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1,234억 원에서 당해연도 1,017억 원을 조성하고 10억 원을 사용하여 2,241억 원입니다.
- 재무제표 부문에 대한 재정상태는 총 자산 3조 8,793억 원이며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대비 6.9%가 증가한 3조 8,521억 원입니다. 또한, 총비용과 총수익을 비교한 재정운영차액은 2,433억 원으로 전년대비 90%가 증가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 성과보고서 부문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성과지표수 174개 중 137개를 초과달성 또는 달성하여 성과지표 달성률 78.7%이며, 이는 전년대비 8%가 증가하였습니다.

- 2022회계연도말 채권은 36억 원이고, 채무액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차입금 12억 원이며,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2,678억 원 증가한 2조 8,119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2022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6월 13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2022회계연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출승인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예비비)
-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예비비)

5. 예비비 지출 결정 및 지출 내역

1) 회계별 편성 내역

(단위: 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150,000,000	142,101,500	0	7,898,500
일반회계	150,000,000	142,101,500	0	7,898,500
특별회계	0	0	0	0

2) 예비비 지출 결정 및 지출 내역

(단위 : 원)

관 련 부 서	예비비 배정과목		지 출 결정일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적 요
	편성목	통계목						
	소 계			150,000,000	142,101,500	0	7,898,500	
회계과	청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401-01	2022. 8. 2.	150,000,000	142,101,500	0	7,898,500	군수 집무실 이전공사

6. 검토의견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일반회계 150,000,000원이며, 그 중 142,101,5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898,500원입니다.
- 2022회계연도 예비비는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 편성하여 지출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정상적으로 예비비가 편성되고, 사용 목적에 맞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출 일: 2023년 6월 1일

2. 제 출 자: 김보경 의원 등 3명

3.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범위 및 지원항목을 확대함과 더불어 지원 절차를 현행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관내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달성군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적용범위 확대 규정 신설(안 제16조)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범위 확대 규정 신설(안 제17조)
-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위원 해촉·제척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20조~제21조)
-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2조~제24조, 별지 제6호 서식)

5.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주택법」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특히 조례안 제17조제3항제9호에 옥상 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 장치를 추가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지원 항목을 확대하였습니다.
- 이 밖에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지원 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관내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와 달성군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의 관계법령 저촉 여부 및 내용과 형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1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원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주택은 제외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대주택법」(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일부개정된 법률로부터 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전까지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부도등이 발생한 같은 조 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2. 영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임대주택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원신청일 전에 시행·착공한 공사나 사업에 대한 관리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공동주택

2. 재건축사업이나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군수의 승인이나 인가를 얻은 공동주택

3. 최근 3년 이내 지원사업 선정 공동주택. 단, 최근 3년 이내에 지원을 받았을지라도 군수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안전 등을 위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대상이 된 임대주택의 보조금은 그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전액에 해당 임대주택 전부 중 임대사업자 외의 자가 소유(임차인 등이 분양 등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한 부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7조제3항(중전의 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옥상 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제18조제2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심사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

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심사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10”을 “15”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직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건설과장, 도시계획과장, 공원녹지과장, 건축과장

3. 주택관리사, 건축·토목·조경·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제6항, 제7항 및 제8항 중 “심사”를 각각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과장”을 “팀장”으로 하며, “담당팀장”을 “공동주택지원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위원의 해촉·제척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군수는 위촉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②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③ 지원사업의 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의 제목 “(심사위원회의 기능)” 을 “(심의위원회의 기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위원회” 를 각각 “심의위원회” 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교부결정” 을 “교부결정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금교부신청서” 를 “보조사업 지원신청서” 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관리주체 등이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22조에 제5항과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한 때에는 군수는 그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공동주택에서는 선정 결과를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자 선정 시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준수하여 사

업자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있으며, 다음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로 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2개월”을 “30일”로 하고, “증빙서류를 붙인 보조사업 실적 보고와 정산서를 제출하여 정산을 하여야”를 “증빙서류를 붙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사업완료 평가 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점검거부와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특례) 제16조제1항 단서 개정규정 및 같은 항 각 호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도등이 발생한 같은 조 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에도 적용한다.

<신 설>

②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제17조(보조금의 지원)

①(생 략)

<신 설>

주택

2. 영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임대주택.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원신청일 전에 시행·착공한 공사나 사업에 대한 관리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공동주택

2. 재건축사업이나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군수의 승인이나 인가를 얻은 공동주택

3. 최근 3년 이내 지원사업 선정 공동주택. 단, 최근 3년 이내에 지원을 받았을지라도 군수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안전 등을 위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7조(보조금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

②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른 사업주체의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제외한다.

1. ~ 8. (생략)

<신설>

9.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단지는 3년 이내에 다시 지원 받을 수 없다.

제18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생략)

② ----- 한국시설안전공단 -----.

제20조(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공동주

는 경우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대상이 된 임대주택의 보조금은 그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전액에 해당 임대주택 전부 중 임대사업자 외의 자가 소유(임차인 등이 분양 등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한 부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
-----.
-----,

-----.

1. ~ 8. (현행과 같음)

9. 옥상 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④ <삭제>

제18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토안전관리원 -----.

제20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택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 10명 -----.

③ 당연직위원으로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그 성별구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1. (생략)

2. 군의 건설과장, 도시계획과장, 공원녹지과장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신설>

⑤ (생략)

⑥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 15명 -----.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

-----.

1. (현행과 같음)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건설과장, 도시계획과장, 공원녹지과장, 건축과장

3. 주택관리사, 건축·토목·조경·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현행과 같음)

⑥ 심의-----

-----.

⑦ 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 설>

⑦ 심의-----

--.

⑧ 심의-----
----- 심의-----

----- 팀장----- 공동주택
지원 업무담당자-----.

제20조의2(위원의 해촉·제척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군수는 위촉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②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제21조(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5. (생략)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후 의결을 할 때 당해 연도 집행 가능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① (생략)

②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의 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
-----.

1.~5. (현행과 같음)

② 심의-----.

제22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보조사업 지원신청서-----. 단, 관리주체 등이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③ (생략)

1.~4. (생략)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3. (생략)

<신설>

<신설>

제23조(보조금의 환수)

① (생략)

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④ -----

-----심의-----

-----.

1.~3.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한 때에는 군수는 그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공동주택에서는 선정 결과를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자 선정 시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조금의 환수)

① (현행과 같음)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6월 1일

2. 제 출 자: 김은영 의원 등 12명

3.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파크골프장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운영방안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달성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제3조)
- 사용허가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5조, 제13조)
- 시설의 개방 및 사용·입장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9조)
- 사용시간·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제12조)
- 사용자의 책임, 양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제16조)
- 시설의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제18조)

5.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내 파크골프장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및 취소, 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사용료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파크골프장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의 관계법령 저촉 여부 및 내용과 형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규칙을 제정하여 파크골프장의 투명한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크골프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파크골프장 시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시설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제3호에 따른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체육단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체육회 산하의 가맹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을 우선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 및 회원단체가 주최(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4.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소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시설 활용상태를 반기별로 점검,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7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보수를 하는 경우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또는 훼손될 것이 예상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종교적, 정치적 행사 등의 개최를 위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사용료에 대한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이나 부대시설 등을 고의로 파손·훼손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타인의 신체 등의 안전에 위해·위협을 준 사람

3. 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할 우려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의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타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한 사람

제10조(사용시간) ①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시: 09:00 ~ 18:00

2. 하절기(7~8월): 08:00 ~ 19:00

3. 동절기(11~2월): 09:00 ~ 일몰 시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그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일일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등) ① 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와 그 반환에 관하여는 군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리·운영 파크골프장 등의 자료 등을 참조하여 합리적 범위에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와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또는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정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②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 해당되어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된 경우 그 보상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4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라 시설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에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를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사용자가 주관하는 대회 등 행사 및 경기의 안내 등을 위해 단기간 설치하는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특별한 설비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홍보물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제1항 본문에 따른 특별한 설비를, 설치기간 만료와 동시에 제1항 단서에 따른 홍보물을 각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만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대신하여 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않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17조(시설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무의 일부를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군에서 출연하거나 군 소유 재산의 관리를 위해 설립한 기관에 대해서 우선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시설의 사용허가·사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준용 등) 시설의 사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파크골프장의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홀 수
세천 파크골프장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54-1	36
강창교 파크골프장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91	18
가창 파크골프장	달성군 가창면 옥분리 778-7	18
진천천 파크골프장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400	18
달성보 파크골프장	달성군 논공읍 남리 1	18
유가 한정 파크골프장	달성군 유가읍 한정리 596-1	18
구지 평촌 파크골프장	달성군 구지면 평촌리 1-43	18
논공 위천 파크골프장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648	18

【별표 2】

사용료(시설 및 부대시설)의 감면 (제12조 관련)

구 분	비고
전액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80% 감면	
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달성군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의 대가(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내고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을 받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사람을 말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취소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서

1. 제 출 일: 2023년 6월 1일

2. 제 출 자: 박주용 의원 등 3명

3.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관내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지원내용·대상·기준,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7조)
- 지원중단 및 환수, 대장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9조)
-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5. 관계법령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제2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먼저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둘째아어로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 내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중학교의 입학준비금 지급,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제공,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 정책을 통해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의 관계법령 저촉 여부 및 내용과 형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단,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2. “중학교”란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나. 특수학교(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중학교에 준하는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다.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중 중학교 과정을 운영 중인 학교)

3. “입학준비금”이란 중학교 입학 시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4. “사용료 등”이란 군이 설치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 등의

설비 또는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그 사용·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이용료 등의 명칭을 가진 것을 말한다.

5. “신청인”이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5조에 따른 대상자녀(이하 “대상자녀”라 한다)와 동일 세대원인 사람을 말한다.

가. 대상자녀의 부 또는 모

나. 가목에 따른 부모의 사망·이혼·직업 등의 이유로 그 부모를 대신하여 대상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학준비금의 지급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일반용봉투(이하 “일반용봉투”라 한다)의 무료 제공

3. 사용료 등의 감면

4. 그 밖에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①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자는 중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의 자녀로 한다.

② 일반용봉투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

녀가정에게 지급한다.

③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자는 개별 조례 또는 규칙을 따른다.

제6조(지원기준) ① 입학준비금은 입학년도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20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로 매년 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② 일반용봉투는 신청한 가정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가구당 1,000L 한도에서 연 1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가정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신청인은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일반용봉투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각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읍·면장은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 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지원 신청사항을 지원한다.

④ 다자녀가정의 사람이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등의 관리·운영자에게 그 신청을 하고 그 관리·운영자가 그에 대해 결정한다. 다만, 그 해당 시설 등에 대한 개별 조례나 규칙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제4조제4호에 따른 지원의 신청 절차, 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대상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이 확인되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대상자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다자녀가정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등) 읍·면장 및 보건소·보건지소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대장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일반용봉투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일반용봉투 지원 신청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이 조례 시행 후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한 취지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방법·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제2조(지정 및 변경) ① 상급학교 입학 및 편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지정(이하 “지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학년도 개시 6월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제1항제1호의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제1항제2호의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
2. 변경사항
3. 변경연월일

□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가로변 또는 골목길 쓰레기 및 공공행사시 발생하는 쓰레기를 각각 담을 수 있으며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는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제21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3. 저소득 주민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
4. 제1호 및 제2호이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경우에는 1가구당 매월 80l를 한도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한도에 대하여 규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6월 13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민선8기 공약·주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정부 인력운영 방침인 인력재배치를 통한 일하는 조직, 책임 있는 조직운동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

4.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사항
 - 과 단위 개정사항: 안 제8조
 - 공공시설과: 신설
 - 팀 단위 개정사항: 안 제4조, 제8조, 제9조
 - 정책추진단: 변경(정책사업→정책사업1, 청년혁신→정책사업2, S자형관광벨트→정책사업3), 폐지(전략시설)
 - 건 축 과: 폐지(공공시설)
 - 공공시설과: 신설(공공시설1, 공공시설2, 기전)
 - 관 광 과: 통합(관광개발+관광시설→관광개발)
신설(교도소후적지개발TF→교도소후적지개발)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민선8기 공약 및 주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과 신설하고, 그 아래에 공공시설1팀, 공공시설2팀, 기전팀을 신설하였으며, 정책추진단 아래 각 팀의 명칭을 정책사업1팀, 정책사업2팀, 정책사업3팀으로 변경하고, 관광과에 교도소후적지개발팀을 신설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 저촉 여부 및 내용과 형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정책사업·S자형관광벨트·청년혁신·전략시설”을 “정책사업
1·정책사업2·정책사업3”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건설과안전총괄과도시계획과도시정비과건축과토지정보
과”를 “건설과안전총괄과도시계획과도시정비과건축과공공시설과토지
정보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제7호 중 “건축행정·주택·공동주택관리·
공공시설·건축물관리”를 “건축행정·주택·공동주택관리·건축물관리”로 하
고, 같은 항에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공시설1·공공시설2·기전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제3호 중 “관광정책·관광콘텐츠·관광개발·관광시설”을 “관광정
책·관광콘텐츠·관광개발·교도소후적지개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실·과·소장과 담당”을 “실·단·과장과 팀장”

으로 한다.

-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같은 조제3호 및 제4조제5항 중 “실·과장” 을 각각 “실·단·과장” 으로 한다.

-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다목 중 “국장·소장·실장” 을 “국장·소장·실장·단장” 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실·과장” 을 “실·단·과장” 으로 한다.

- ④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3항 중 “실·과” 를 각각 “실·단·과” 로 한다.

- ⑤ 대구광역시 달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군 실·단·과·소장” 을 “실·단·과장” 으로 한다.

- ⑥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소” 를 “실·단·과” 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제1항 중 “실·과장” 을 각각 “실·단·과장” 으로 한다.

- ⑦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국장 및 실·과·소장” 을 “국·소장 및 실·단·과장” 으로 한다.

- ⑧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실·과·소장” 을 “실·단·과장” 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보조기관의 설치)④ 정책추진단장은 <u>정책사업·S자형관광벨트·청년혁신·전략시설에</u>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p> <p>제8조(건설도시국)① <u>건설과·안전총괄과·도시계획과·도시정비과·건축과·토지정보과</u>를 둔다.</p> <p>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p>7. <u>건축행정·주택·공동주택관리·공공시설·건축물관리</u>에 관한 사항(신설)</p> <p>8. <u>토지관리·지적·지적재조사·지가정보·주소정보</u>에 관한 사항</p> <p>제9조(문화관광국)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p>3. <u>관광정책·관광콘텐츠·관광개발·관광시설</u>에 관한 사항</p>	<p>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보조기관의 설치)④ ----- <u>정책사업1·정책사업2·정책사업3</u>에 -----.</p> <p>제8조(건설도시국)①----- <u>건설과·안전총괄과·도시계획과·도시정비과·건축과·공공시설과·토지정보과</u>를 -----.</p> <p>② (현행과 같음)</p> <p>7. <u>건축행정·주택·공동주택관리·건축물관리</u>-----</p> <p>8. <u>공공시설1·공공시설2</u>기전에 관한 사항</p> <p>9. (현행 8과 같음.)</p> <p>제9조(문화관광국)②(현행과 같음)</p> <p>3. <u>관광정책·관광콘텐츠·관광개발·교도소후적지개발</u>에 관한 사항</p>

□ 지방자치법

-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4조(시·군·구의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6월 13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민선8기 공약·주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정부 인력운영 방침인 인력재배치를 통한 일하는 조직, 책임 있는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4.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 안 제2조
 -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중 지방공무원 정원 개정: 1,019명 → 1,025명
 -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998명 → 1,004명
-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개정 : 안[별표 2]
 - 일반직 공무원
 - 6급: 28% 이내 → 27% 이내
 - 7급: 30% 이내 → 31% 이내
 - 8급: 27% 이내 → 28% 이내
 - 9급: 8% 이상 → 7% 이상

-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개정 : 안[별표 3]
 - 총 정원: 1,019명 → 1,025명
 - 본청 정원: 653명 → 660명
 - 직속기관 정원: 112명 → 111명
 - 기타 직급별 세부 인원 조정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민선8기 공약 및 주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총 정원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각각 1,025명, 1,004명으로 6명 증원하고,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6급 27%, 7급 31%, 8급 28%, 9급 7%로 변경하였습니다.
- 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 저촉 여부 및 내용과 형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19명” 을 “1,025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98명” 을 “1,004명” 으로 한다.

별표 2,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 이라 한다)을 <u>1,019명</u>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998명</u></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u>1,025명</u>----- -----.</p> <p>1. ----- : <u>1,004명</u></p>

현행							개정안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1% 이내	5.9% 이내	28% 이내	30% 이내	27% 이내	8% 이상	비율	1.1% 이내	5.9% 이내	<u>27%</u> 이내	<u>31%</u> 이내	<u>28%</u> 이내	<u>7%</u> 이상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읍및그출장소	면	구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읍및그출장소	면
총계	1,019	653	21	112	177	56	총계	<u>1,025</u>	<u>660</u>	21	<u>111</u>	177	56
정무직계	1	1					정무직계	1	1				
군수	1	1					군수	1	1				
일반직계	985	646	21	85	177	56	일반직계	<u>991</u>	<u>653</u>	21	<u>84</u>	177	56
3급	1	1					3급	1	1				
4급	8	5	1	1	1		4급	8	5	1	1	1	
5급	42	28	2	2	7	3	5급	<u>43</u>	<u>29</u>	2	2	7	3
6급이하계	934	612	18	82	169	53	6급이하계	<u>939</u>	<u>618</u>	18	<u>81</u>	169	53
연구직계	3	3					연구직계	3	3				
연구관							연구관						
연구사	3	3					연구사	3	3				
지도직계	27			27			지도직계	27			27		
지도관	2			2			지도관	2			2		
지도사	25			25			지도사	25			25		
별정직계	3	3					별정직계	3	3				
5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이하계	2	2					6급상당이하계	2	2				
7급상당이하계	1	1					7급상당이하계	1	1				

□ **지방자치법**

-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 4조 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 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 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6월 13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달성군 관광활성화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특산품의 다양화를 위해 특산품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역특산품의 범위 확대(안 제28조~제29조)
- 달성군 관광활성화 자문위원회 근거규정 신설(안 제36조~제43조)

5.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달성군 관광활성화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군 홍보 지역특산품 다양화를 위해 지역특산품의 범위를 기존 ‘농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에서 ‘농산물·축산물·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군에서 제조·가공한 공산품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지역특산품의 확대와 다양화를 통해 지역민과 상생하는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 저촉 여부 및 내용과 형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농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등”을 “농산물·축산물·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군에서 제조·가공한 공산품 등(이하 일괄하여 “특산품”이라 한다)”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특산품”을 “특산품”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관광사업의 등록”을 “관광사업의 등록 및 관광활성화 자문위원회”로 한다.

제36조부터 제4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관광활성화 자문위원회 설치) 군의 관광산업 발전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활성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시책을 제안한다.

1. 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관광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제2항의 위원들 외에 문화예술과장, 관광과장, 달성군시설관리공단 관광사업 소관 부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학계,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관광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관광 정책팀장이 된다.

제3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한 때

3.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제4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4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 또는 분야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군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고 시책을 제안한다.

1. 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
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관광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제2항의 위원들 외에 문화예술과장, 관광과장, 달성군시설관리공단 관광사업 소관 부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p><u>추천하는 군의원</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학계,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관광 관련 전문가</u> 2. <u>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u> <p><u>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관광정책팀장이 된다.</u></p> <p>제39조(위원의 임기) ① <u>당연직</u> <u>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u>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u> <u>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u>②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u> <u>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본인이 원하는 때</u> 2. <u>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한 때</u> 3. <u>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u> <p>제4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u>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u></p>
--	--

	<p>② <u>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제41조(회의 등) ① <u>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u></p> <p>② <u>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③ <u>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u></p> <p>제42조(의견청취) <u>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 또는 분야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u></p> <p>제43조(수당 등) <u>위원회에 출석한 군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	--

참고**관계 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상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일: 2023년 6월 13일

2. 제 출 자: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전국 최대 국내화석 전문박물관인 달성화석박물관 건립과 이에 따른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6조)
- 박물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23조)
- 표본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제30조)
-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31조~제38조)
-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9조~제45조)

5.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국 최대 화석 전문 박물관인 달성화석박물관 건립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함으로 박물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표본의 수집 및 관리, 시설의 사용 및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달성화석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며, 조례안의 관계법령 저촉 여부 및 내용과 형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의 설립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달성화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2.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상리 97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물”이란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박물관 내 일정한 장소에 상시 또는 일정기간 전시되는 표본 등의 자료를 말한다.
2. “표본”이란 자연을 구성하는 암석, 광물, 생물, 화석 등 모든 유형의 자연물로서 보존·전시·연구 가치가 있어 박물관이 수집·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표본 등을 채집, 발굴, 제작,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람료”란 전시물 또는 박물관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강료”란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기탁”이란 당사자 중 한쪽이 물건을 맡기고 상대방이 이를 보관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2장 운영

제4조(기능 및 운영) ① 박물관은 표본의 수집·관리·전시 및 관람객을 위한 개방, 화석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능을 한다.

② 박물관 운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③ 군수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운영 및 관리사무의 일부를 자격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음날(다만, 그 공휴일 다음날이 토요일인 경우 개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6조(관람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30부터 17:3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전시물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람료를 전액 반환한다.

1. 관람 전 관람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경우

③ 제31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아 그 시설에서 전시물 등을 전시 등을 하는 사람(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은 관람객으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별도의 관람료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동반한 예우대상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14. 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한 달성군민으로서 3자녀 이상을 둔 가족
 15.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6. 공무수행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7. 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18. 어린이날(5월 5일)에 방문하는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
 1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제32조에 따른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주요 관광시설 운영자 또는 자치단체 등 간의 상호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
- ④ 관람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전시물이나 그 밖에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화기나 흥기를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건을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사용하거나 촬영을 하는 행위
4.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물 등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관람자가 박물관의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더럽혀 못쓰게 만들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박물관에서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기능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총당 등을 위하여 프로그램 수강을 원하는 사람(이하 “수강자”라 한다)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수강료 등을 정한 경우 사전에 군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강료 등 납부 및 반환) ① 수강자는 수강료 등을 해당 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강자가 납부한 수강료 등의 반환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4조(수강료 등의 감면)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항목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강자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한다.

제15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카페
2. 기념품점(뮤지엄샵)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편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군수는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달성화석박물관 운영위원회

제17조(운영위원회 설치)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와 공공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에 따라 달성화석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문화·과학계 인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박물관장과 박물관 소관부서를 총괄하는 달성군의 국장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청렴서약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따른 위촉직 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위원회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4. 위원이 운영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그로써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운영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운영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에 있어서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박물관 업무 소관부서장이 된다.

제23조(수당 등 지급)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표본의 수집 및 관리

제24조(표본평가위원회) ① 표본의 구입 및 평가를 위하여 달성화석박물관 표본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안건 심의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구성하고 그 안건 심의절차가 종료한 때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박물관장이 된다.

③ 평가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표본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그 성별구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관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대상 표본의 진위 여부와 적정 가격
2. 수집대상 표본의 역사·문화·학문적 가치

3. 그 밖에 표본 수집에 필요한 사항

⑥ 군수는 평가위원회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해산되기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3. 이전에 평가와 표본 취득시 박물관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4. 평가대상 표본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25조(표본의 구입) ① 박물관에 전시 또는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표본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② 표본의 구입은 군공보와 군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표본의 기증) ① 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 따라 전시와 연구에 필요한 표본을 기증받을 수 있으며, 이때 평가위원회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제2항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한다.

②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 및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27조(표본의 기탁 등) ① 군수는 박물관의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표본을 국내외 개인 및 단체·기관으로부터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 전환 등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③ 기탁 받은 표본은 박물관 소장표본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④ 기탁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그 기간 만료 후 기탁자의 소재가 불명일 경우, 일정기간 공고 후 기증표본으로 처리한다.

⑤ 기탁기간 만료 후 기탁자가 기탁표본을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기증표본으로 처리한다.

제28조(표본의 관리) ① 박물관은 표본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분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표본의 분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표본의 대여 등) 박물관의 운영과 표본의 원형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본의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제30조(수당 등의 지급)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시설의 사용

제31조(시설사용허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과학과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영상물 촬영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32조(시설사용허가 신청) ① 박물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시설 사용시간)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제6조에서 정한 관람시간 내로 한다.

② 군수 및 시설사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아 시설 사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4조(시설사용허가의 변경 및 취소) ①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설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 기간이나 장소 등 허가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시설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그 배상·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시설사용자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 사용허가의 내용과 다르게 시설을 사용한 때
3. 제31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박물관의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35조(시설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시설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 사용중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시설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36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자는 그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표 4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박물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시설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 ③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의 개최를 위해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시 시설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7조(시설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시설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전대하거나 그 사용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시설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38조(시설 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시설사용자는 제32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박물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것이 어려운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서의 전시물 등의 관리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6장 위탁운영·관리

제3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법인
 2.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법인·단체
-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재위탁 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시설의 선량한 관리운영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절차·방법과 위탁협약의 체결 등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운영지원 및 비용부담) ①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박물관의 건립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제40조에 따른 지원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가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나 변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제40조에 따른 지원금 및 수탁 받은 재산을 수탁 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조례·규칙 및 위탁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2조(위탁협약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시설의 목적에 위배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4.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관리·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협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시설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제43조(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시설의 수탁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변경된 시설물 등의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44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일 전 3개월까지 다음 연도의 시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받은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일 전 15일까지 수탁자에게 승인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

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사무를 관장에게 위임한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법**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상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